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주)메이펀딩대부

2. 제재조치일 : 2021. 8. 1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 재 내 용
기 관	과태료 560만원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

□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동법 제7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,

○ (주)메이펀딩대부는 검사대상 기간 중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면서, 신용회복위원회가 3회에 걸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요청*하였음에도 동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

* 가입요청 공문 발송(2018.05.10., 2018.07.19., 2018.09.17.) 등

< 관련법규 >

1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5조

2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